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3월 18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 17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3. 17.(화)	담당부서	가스산업과
담당과장	양기욱 과장(044-203-5230)	담 당 자	엄상후 사무관(044-203-5234)

차량용 액화석유가스(LPG) 정량검사 제도 시행

- LPG충전소 정량 미달 공급 행위 금지…소비자 보호 기대 -

- 제도 정착 위해 6개월 계도 기간 거쳐 9월 18일 본격 시행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성윤모)는 **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(LPG) 정량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3월 18일 공포**한다고 밝혔음

○ 이번 시행규칙은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개정('19.8.20)에 따른 것으로 **정량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,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 대상과 내용 등 구체적 규정**이 담겨 있음

○ 이는 그동안 휘발유·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**정량검사를 LPG충전소까지 확대**하는 것으로 **LPG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보호가 강화**될 것으로 기대됨

○ 앞으로, LPG 정량 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**위반 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, 최대 허가취소 처분**까지 받게 됨

< 액화석유가스(LPG) 정량검사 제도 개요 >

- **(검사대상)**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(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)
- **(허용오차)** -1.5%(20L 측정 기준 -300mL 초과할 경우 정량공급의무 위반)
- **(검사방법)** 1차 간이검사(코리올리 유량측정)와 2차 정식검사(무게측정)
- **위반사업자의 행정처분**

구분	①정량미달		②영업시설 설치·개조	③정량미달 +영업시설 설치·개조
	㉮경과실주)	㉯그 밖의 경우		
1회 위반	경고	사업정지 30일	사업정지 60일	허가취소
2회 위반	사업정지 30일	사업정지 60일	허가취소	-
3회 위반	사업정지 60일	허가취소	-	-
4회 위반	허가취소	-	-	-

주) 계량기 검정유효기간(3년)이 경과하지 않았고, 영업시설 설치·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 미달량이 2% 미만인 경우

□ 한편, 산업부는 새로 도입되는 **LPG 정량검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**하기로 함

○ 이 기간 중 산업부는 **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량검사 제도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, 대국민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**임. 또한, 정량검사 과정상의 **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장비, 방법에 대한 추가 안전성 검증도 실시**할 예정임

○ 우선, 계도기간 중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하여 **시범운영을 실시**하고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하여 2021년부터 **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**할 계획임

* LPG충전소 현황(개소) : ('17년) 1,971 → ('18년) 1,967 → ('19년) 1,948 → ('20.2월) 1,946

□ 산업부는 LPG정량검사 제도 시범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**기술적·제도적 보완사항**을 **파악·해결**하고, **소비자와 LPG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**을 통해 **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**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엄상후 사무관(☎ 044-203-523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액화석유가스(LPG) 정량검사 제도 개요**

◈ 액화석유가스의 **정량미달 공급** 및 정량미달 공급 목적의 **영업시설 설치·개조 행위를 금지**하는 액법 개정('19.8.20 일부개정, '20.2.21 시행)

* 법 제23조의2(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) 신설

□ **액화석유가스 정량공급의무 등 위반검사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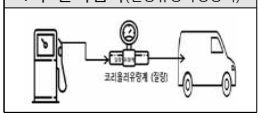
○ **(검사대상)**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(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)

* 액화석유가스 충전기(「계량법 시행령」에 따른 'LPG미터')

○ **(허용오차)** -1.5%(20L 측정 기준 -300mL 초과할 경우 정량공급의무 위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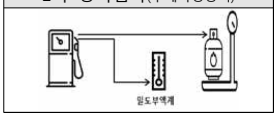
○ **(검사방법)** 1차 간이검사(코리올리 유량측정)와 2차 정식검사(무게측정)

1차 간이검사(질량유량측정방식)



(허용오차 –1.5% 초과시) ⇨

2차 정식검사(무게측정방식)



□ **위반사업자의 행정처분 및 공표**

○ **(행정처분)**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

구분	①정량미달		②영업시설 설치·개조	③정량미달 +영업시설 설치·개조
	㉮경과실주)	㉯그 밖의 경우		
1회 위반	경고	사업정지 30일	사업정지 60일	허가취소
2회 위반	사업정지 30일	사업정지 60일	허가취소	-
3회 위반	사업정지 60일	허가취소	-	-
4회 위반	허가취소	-	-	-

주) 계량기 검정유효기간(3년)이 경과하지 않았고, 영업시설 설치·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미달량이 2% 미만인 경우

○ **(공표제도)** 위반 사업자의 위반내용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표

구분	주요내용
공표대상	품질기준 위반 + 정량공급의무 위반
공표내용	①제목, ②허가 또는 등록 사업의 종류, ③위반사업자의 상호·.대표자·소재지, ④위반내용, ⑤행정처분 내용, ⑥행정처분일, ⑦행정처분기간, ⑧단속기관 및 단속일자
공표방법	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, 관보, 신문, 방송 등